

의안 번호	2444	【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6. 30.(월) 홍영진 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6. 30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7. 14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 (홍영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도시농업 보조금 지원 사항 신설 등 제도적 정비로 도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보조금의 지원 사항 개정 및 신설(안 제8조)
 -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
 - 친환경농업 및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
 -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
 - 도시농업 관련 학습·생태체험텃밭 조성사업
 - 상자텃밭 보급사업
 -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상토 및 농자재 등의 보급사업
 -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행사지원 사업
 - 그 밖의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다. 근거법규

-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명주)

-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농업 보조금 지원 사항 신설 등 제도적 정비로 도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·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,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.